

등록번호	여성가족과-11052
등록일자	2015.3.23.
결재일자	2015.3.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임명속	신선애	유정택	03/23 유용렬	
협조				

2015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2015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

우리 구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령 준수여부 및 운영지침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명품 보육환경 구축에 기여

I 큰 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 어린이집 지도점검
- 서울시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 어린이집 지도점검
- 「2015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보육담당관-2994(2015.02.11)]

II 추진 방향

- 정기·수사·특별점검을 통한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
 - 목적, 대상, 사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점검을 통해 효율성 및 파급효과 강화
- 2014년 개원 및 2015년 위탁심의 예정 어린이집 우선점검
 - 2014년 개원 어린이집 2개소 : 한화태평로, 제일병원
 - 2015년 10월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의 어린이집 3개소
 - 신규위탁(1) : 다산 / 재위탁(2) : 충무, 신당동
- 재무회계 지침 준수 및 주요지적사례 중점관리
 - 어린이집 예산편성 기준, 회계처리 절차 등 재무회계 지침 숙지
 - 주요지적사례 및 처분규정에 대한 정보공유로 반복사례 발생 차단

■ 우수시설과 문제시설에 대한 구분 관리

- 서울형 공인 신규·재평가, 정부평가인증 재평가 우수시설(상위 5% 이내)은 다음년도 자체점검 유예
- 점검결과 행정처분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 평가의 실효성 확보

III 세부추진계획

1 점검기간

■ 정기점검 : 2015. 3. 24 ~ 9. 30

- 어린이집별 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표 제출 : 3. 24 ~ 4. 3
- 방문점검 : 4. 13 ~ 9. 30.

※ 전체 점검기간을 어린이집에 사전통보하되, 개별 방문일정은 미통보

■ 수시점검 : 사안 발생시

- 민원제보 등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하여 불시 방문점검

■ 특별(기획)점검 : 상급기관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

- 상급기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사전모니터링 후 대상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 엄마지킴이 점검 : 2015. 5월 ~ 11월(자체계획 별도수립)

2 점검대상

■ 관내 전체어린이집(67개소)

('15. 3. 20 현재)

합계	국공립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67	18	8	8	17	16

※ 2015년도 개원 및 2014년도 우수시설 정기 방문점검 제외

- '15년도 개원(1개소) : 직장(GKL행복)
- '14년도 서울형공인 및 평가인증 우수시설(상위 5%) : 서울시 공문통보 예정

3 정기점검반 편성·운영

■ 구성인원 : 6명 → 반장(보육지원팀장) 1명, 반원(보육지원팀 직원) 5명

■ 조편성 및 운영 : 2~3인 1조로 편성·운영

- 현원기준 ㄱ 70인 이상 : 3인 1조
 ㄴ 70인 미만 : 2인 1조(※ 직장어린이집 현원 관계없이 2인 1조 편성)

4 점검방법

■ 정기점검 : 지도점검 매뉴얼에 따라 어린이집 지도점검표 점검방식으로 진행

- 1차 : 어린이집 자체점검 → 자체점검 실시후 구에 제출
- 2차 : 사전 모니터링 실시 후 정기 점검반 방문점검

- 사전 모니터링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운영비 통장 입·출금내역
 어린이집 자체점검표, 대조 확인

- 2014년 개원 및 2014. 10월 이후 위탁체(원장) 변경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점검
- 2015년 개원 및 2014년 평가인증·서울형 공인 우수어린이집 방문점검 제외
 ※ 단, 자체점검표 제출결과 미흡하거나 민원제보 등의 문제 발생시 현장점검 실시

■ 수시점검 : 현장방문, 민원제보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집중점검

■ 특별점검 : 상급기관 점검계획에 따라 합동 또는 교차점검 등

■ 엄마지킴이 점검 : 엄마지킴이 평가표에 따라 방문점검

※ 엄마지킴이 점검결과는 정기점검시 수시로 반영

5 중점점검사항

- ① 보육료, 필요경비 수입 등 상한선 준수 및 수납방법의 적정성
- ②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 ③ 국고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 ④ 회계규칙의 준수 여부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 ⑤ 예산편성 및 집행 규정 및 구 지침 준수 여부
- ⑥ 보육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가입, 퇴직급여 적립 등 적정여부

- ⑦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 ⑧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안전 관리실태 등

IV 점검결과 조치

■ 영유아보육법 위반시 처분기준에 따라 엄정조치

조치사항	사 유
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제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부실운영 어린이집 불이익 강화 및 시정여부 확인 철저

- 시설운영·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민원발생 등 부실운영 어린이집은 행정조치 및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처분결과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 및 재발방지 등 지속적 관리

■ 우수어린이집 인센티브 지급

- 엄마지킴이 점검결과 등 반영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급
- 서울시 모범어린이집 선정시 추천

■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보육교직원 행정정보 공표로 경각심 제고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 공표대상 :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또는 보육교사)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 급식기준 위반 및 아동학대 행위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내 용 : 시설명, 원장·대표자명, 위반행위, 10년간 위반이력, 처분내용 등
 - ※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15년 보육사업안내 삽입 예정) 지침을 반영 시행계획 마련예정

V 행정사항

- 어린이집 운영관리교육 실시(완료) : 2015. 2. 23 ~ 2. 25
- 어린이집 정기점검 일정 통보 : 2015. 3. 24
- 어린이집 자체 점검표(통장입·출금내역서) 수합 : 2015. 4. 3 이내
 - ※ 운영비 통장 입·출금내역서(기간: 2014.10월 ~ 2015. 3월)
- 어린이집 방문 점검 : 2015. 4. 13 ~ 9. 30
- 지도점검 결과 서울시 보고 : 2015. 7월 · 12월
- 지도점검 결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2015. 12월

- 첨 부 1. 어린이집 자체점검표 1부.
2.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